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06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서울관광재단 출연금

2)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3) 필 요 성

-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관광재단의 운영 지원
- 외래관광객 3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,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 개선 등 사업수행

4) 사무내용

-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
-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
- 기업회의, 인센티브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 등 육성 지원
-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
-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-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제공
-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

5) 출 연 금(2026년) : 금73,217,306천원

- 본부운영비 : 금18,095,998천원 (인건비, 경비 등)
- 고유사업비 : 금55,121,308천원

※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나. 서울관광재단 기관 개요

1) 소 재 지 :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

2) 규 모 : 전용 6,941 m^2 , 9개 층(지상1층 일부, 4~11층, 6,941 m^2)

3) 전경 및 위치도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영선(☎2133 - 2811)